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방송분야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한시정원)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683”을 “685”로 하고, 일반직 계 “675”를 “67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04”를 “606”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74조 관련)

제74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9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74조(한시정원) ① 방송분야 외 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u>②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u>	<u>제74조(한시정원)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u>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7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83</u>	<u>685</u>	+2
·	·	·	
·			
일반직 계	<u>675</u>	<u>677</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04</u>	<u>606</u>	+2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5]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74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제7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u>1. 제74조</u> <u>제1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3</u> <u>년 2월 28</u> <u>일)</u>	<u>1. 제74조</u> <u>관련 한</u> <u>시정원</u> <u>(존속기</u> <u>한: 2024</u> <u>년 2월 29</u> <u>일)</u>	
·	·	·	
·	·	·	
2. 제7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9일)	<u>2. 제74조</u> <u>제2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4</u> <u>년 2월 29</u> <u>일)</u>	<u><삭 제></u>	
<u>총계</u>	<u>1</u>	<u><삭 제></u>	-1
<u>일반직 계</u>	<u>1</u>	<u><삭 제></u>	-1
<u>5급 이하</u>	<u>1</u>	<u><삭 제></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3 - 2362